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고소·고발 최종결과 알림

지난 2016년 10월 11일 7개의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공동고소·고발에 십대여성인권센터외 고소인 2인과 255개 단체가 한국YWCM연합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27일에 재정신청 및 재항고 기각 통지를 최종적으로 통보받아, 이에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고소·고발에 함께 해주신 255개의 단체에 경과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고소·고발 취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조장, 알선, 유인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상대로 이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공론화하여 우리 사회에 그 심각성을 알리고, 이러한 현실을 전부 시정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을 2인의 피해아동·청소년과 255개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고소·고발하였습니다.

2. 고소·고발 내용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이용자가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성별이나 나이 등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손쉽게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나.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피의자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짜와 장소에서 각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개설한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매매를 의미하는 약어를 사용한 회원의 닉네임을 채팅방 제목으로 노출시키거나 위 약어를 포함한 게시글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그 밖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습니다.

다. 성매매처벌법위반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은 가항의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자들에게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라.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은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각 위 가항 및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3. 기각사유

고소·고발 초기에 경찰은 피고소고발인들을 찾거나,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현행 법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며, 피고소고발인들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피고소고발인의 이름과 주소를 자체적으로 찾아 경찰에 제출하며 적극적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마지못해 피고소고발인들을 조사하였으며 처벌에 관한 법령이 없을 뿐 아니라, 1:1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상황에 운영자가 가담한 것이 아니고, 고소·고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하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경찰의 의지 없음과 피고소고발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속기한 수준에 불과한 조사 결과에 대해 경찰에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255개의 단체가 공동고소·고발했을 뿐

아니라 명백한 피해자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래도 검찰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수사 및 폭넓은 법적 적용을 통해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을 기대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또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통지를 내렸습니다.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이 이후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항고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재항고와 재정신청서 및 재정신청이유서, 재정신청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기소처분을 수궁할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경과를 보고합니다.

4. 경과

날짜	경과	세부내용
2016년 10월 11일	기자회견 및 고소고발장 제출	· 기자회견(한국YWCA연합회 강당) · 고소고발 취지 및 고소고발장 내용, 향후계획 등 (고소인 2인과 255개 단체 공동고발) · 공동 고소고발장 제출(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6년 12월 9일	대표고발인 초동조사 출석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담당자: □□ 수사관) · 고소고발 취지 및 고발 내용 진술, 추가 증거자료 제출 ·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청
2017년 2월	담당 수사관 변동	· 인사 발령으로 인한 수사관 변동 (□□ 수사관 → ○○ 수사관)
2017년 3월	각하 예정 통보	·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자 처벌조항이 없음으로 인해 각하 처리될 예정이고, 진행 사항을 설명해 줄테니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음. (담당: ◇◇ 경사)
2017년 4월 7일	경찰청 재방문 (재수사 및 각하 지연 요청)	·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피고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각하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함. · 피고발인들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함. · 본 센터에서 피고발인 정보(대표자 이름 및 주소)를 제출하며 재수사를 요청함. 방문 후 당일에 피고발인 1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도 추가 제출함.
2017년 7월 24일	경찰청 재방문 (불기소 의견 송치 예정 통보)	· 피고발인 조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수사 결과 설명을 듣기 위해 재방문함. · 피고발인 조사 결과 7개의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는 4명이었음. 1:1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상황에 운영자가 가담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었음. 또한 조사를 받은 피고발인들은

		어플리케이션 내 금지어를 설정하여 자체 검열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함.
2017년 8월 18일	검사실 변동	·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변동됨.
2017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	· 4명 피고발인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2017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지를 우편으로 수령
2017년 12월 1일	항고장 제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항고장 및 증거자료 제출
2017년 12월 22일	추가 증거자료 제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항고 추가 증거자료 제출
2018년 5월 2일	항고기각 처분	·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기각 통지를 우편으로 수령 · 추가 증거자료 취합하여 재항고 신청 진행 중
2018년 5월 10일	재항고장 제출	· 대검찰청/ 재항고장 제출
2018년 5월 10일	재정신청서 제출	·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서 및 재정신청이유서 제출 · 6월에 재정신청이유보충서 제출
2018년 6월 21일	재항고사건 접수 통지	· 대검찰청 통지를 우편으로 수령
2018년 9월 27일	재정신청 기각통지	· 서울고등법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기각.
2018년 11월 30일	재항고 기각통지	· 대검찰청/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

5. 논평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으며, 그 폐해 또한 심각합니다. 이에 더 이상 피해자를 양산할 수는 없다는 인식하에 십대여성인권센터 외 고소인 2인과 255개 단체는 7개의 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를 고소,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항고기각, 재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결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한 음란물 유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와 같은 성착취, 온라인 음란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관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사전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 건 수사기관은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아청법위반을 포함한 어떠한 기소도 하지 않았고, 그에 관해 처벌에 관한 법령이 없으며, 1:1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상황에 운영자가 가담하지 않았고, 더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아청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무’ 조항의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이 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안에서 이루어진 음란물유통에 대하여 카카오편운영자에게 음란물차단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공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또한 현행 아청법 위반 등으로 규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성의하게 처사했으며, 인권옹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 해석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2년이 넘는 그간의 경과를 알리며, 고소·고발에 참여한 피해 아동·청소년 2인 및 255개 기관과 함께 한국사회 수사기관에 대해 분노를 넘어 규탄의 마음을 표합니다.